장례 · 장사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례 · 장사]

사람이 사망하면 장례를 치르고 사망신고를 하며, 시신에 대한 장사(葬事)를 지냅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일반적인 장례의 절차, 장례식장 또는 상조업체를 이용해 장례를 치를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사망신고의 주체와 시기, 화장 및 매장의 절차와 방법,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등 장사(葬事)시설 이용에 대한 안내까지 장례와 장사에 대한 법령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장례 · 장사 1
1. 장례 4
1.1. 장례 절차 알아보기 4
1.1.1. 장례의 절차 4
1.2. 장례서비스 이용 시 확인사항 6
1.2.1. 장례식장 이용 6
1.2.2. 상조업체 이용 7
1.3. 장례 후 절차 10
1.3.1. 사망신고 10
2. 장사(葬事) 13
2.1. 화장(火葬)하기 13
2.1.1. 화장 절차 및 방법 13
2.1.2. 화장시설 이용 15
2.1.3. 봉안시설 안치 17
2.1.4. 자연장지 안장 19
2.2. 매장하기 22
2.2.1. 매장 절차 및 방법 22
2.2.2. 공설묘지 이용 25
2.2.3. 사설묘지 이용 27

1. 장례

1.1. 장례 절차 알아보기

1.1.1. 장례의 절차

장례란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합니다.

장례주관자

▪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연고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자녀 외의 직계비속
5. 부모 외의 직계존속
6. 형제·자매
7.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서 정하는 사람
8. 위 1.부터 7.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주관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무연고 시신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해야 하고, 처리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4항).

√ 무연고 시신의 매장 또는 봉안 기간은 5년이며, 시장등은 매장 또는 봉안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 제외)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

· 다만,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연고자가 아니지만 개인적 친분이나 사회적 연대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주관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지자체는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장사(葬事)업무 안내』, 244쪽 참조).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따른 장례 절차

※ 법령에서는 장례 대신 “상례(喪禮)”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 건전한 가정의례(家庭儀禮) 정착을 위해 「건전가정의례준칙」에 상례와 관련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삿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합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제12조).

▪ 사망 후 매장 또는 화장이 끝날 때까지 하는 예식은 발인제(發靷祭)와 위령제를 하되, 그 외의 노제(路祭)·반우제(返虞祭) 및 삼우제(三虞祭)의 예식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제9조).

※ 용어해설

- 장삿날: 장사[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火葬)하는 일]를 지내는 날
- 발인제: 상여가 상가나 장례식장을 떠나기 전에 지내는 제사
- 위령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지내는 제사
- 노제: 발인할 때 문 앞에서 지내는 제사
- 반우제: 장례 지낸 뒤에 신주(죽은 사람의 위패)를 집으로 모셔 오는 제사
- 삼우제: 장사를 지낸 후 세 번째 날에 지내는 제사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Q. 무연고 사망자나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 제도가 궁금합니다.

A. 무연고 사망자 또는 저소득층 사망자의 장례는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공영장례제도를 이용해 치를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자세한 지원 자격 및 내용은 조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영장례”란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고인예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다음의 지원을 하는 공공장례입니다(「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제2조제1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

√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

√ 시장 및 구청장이 지정한 민간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비용

또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지자체는 보건복지부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라 수행하는 한국장례문화진흥원 별빛버스사업(www.kfcpi.or.kr)을 통해 공영장례 절차 등 상담서비스, 장례예식 지원, 시신 운구 및 조문객 이동 편의 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장례 절차



<출처: 한국장례문화진흥원-장사정보마당-장례절차 참조>

※ 장례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홈페이지(www.kfcpi.or.kr)> 또는 장사지원센터(☎1577-4129)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 장례서비스 이용 시 확인사항

1.2.1. 장례식장 이용

장례식장 이용계약 시 다음의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장례식장 이용 가격 게시 및 준수

- 장례식장영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전단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각종 행위별 수수료
  - 장례용품의 품목별 판매가격과 원산지 등
  - 유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 음료 등의 종류와 가격
  -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관할행정기관
- 장례식장의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하고, 염습실은 1회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후단).
- 장례식장영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
  - 게시한 장례식장 임대료·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
  -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

계약 내용 설명

-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8항).
  - 장례식장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 장례의식의 내용
  - 장례식장 이용기간 및 이용시설
  - 이용료 및 그 지급방법과 시기
  -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약관

▹ 그 밖에 이용자와 장례식장영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 ※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
>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은 권고사항으로서 당사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거래명세서 발급

▪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장례식장의 시설명·소재지, 거래연월일 및 거래 항목·단가·수량 등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9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6제1항).

▪ 거래명세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6제2항).

> ※ 전국 장례식장의 위치 및 가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ehaneu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2. 상조업체 이용

상조업체의 상조서비스는 선불식과 후불식으로 나뉩니다.

구분	내용
선불식 상조서비스	▪ 소비자가 상을 당하기 전에 상조상품에 가입해 대금을 상조업체에 미리 나누어 내는 방식의 상조서비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
후불식 상조서비스	▪ 소비자가 상을 당하기 전에 상조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장례가 끝난 후 상조업체에 대금을 내는 방식의 상조서비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미적용 및 감독기관의 부재

선불식 상조서비스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합니다.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이하 "재화등"이라 함)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 및 이에 부수한 재화

-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등으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재화등

선불식 상조서비스 계약 시 다음의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계약 관련 정보 제공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모집인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항).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시 소비자가 설명을 들어야 할 사항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모집인의 상호(모집인이 자연인인 경우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대표자의 이름 2.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 3. 재화등의 가격과 대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4. 재화등을 공급하는 방법 및 시기 5. 계약금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7. 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8. 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 체결 사실, 계약기간,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 지급사유 9.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받은 총선수금 중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전하고 있는 총보전금액 비율 10.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약관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 가. 재화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나. 공급일시·공급지역·공급수량·공급지역 등 재화등의 공급조건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주된 목적이 되는 재화등이 공급되기 전에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등이 있는 경우 그 가격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모집인은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철회할 경우 다음의 기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발송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14일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14일

-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일부터 3개월

소비자의 계약 해제권

▪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때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
-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 파산 또는 화의(和議)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

※ 계약 해제 시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계약한 상조업체가 폐업 후 잠적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영업 등록 시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따라서 소비자는 선수금 보전기관을 통해 법정 비율(선수금 보전기관에 신고된 총 납입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피해보상금 수령 후 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기존 납입금액을 전부 인정받아 서비스에 참여하는 상조업체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www.mysangjo.or.kr) 참조>

※ 상조업체가 납입금의 50%를 선수금 보전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경우,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실제 예치된 금액만 받게 되므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상조업체가 납입금의 50%를 실제로 예치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소비자24-피해/분쟁 관련사례(www.consumer.go.kr) 참조>

※ 상조서비스 계약 시 소비자 주의사항

· 계약 체결 후 계약 관련 서류(계약서, 회원증서, 피해보상증서 등)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 피해 발생 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업체에 회원정보 변경 요청을 해야 합니다.

·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 예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계약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관리해야 합니다.

· 상조서비스 이용 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및 비용 등이 계약 내용과 다르지 않은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소비자뉴스-피해예방주의보-"상조서비스 계약 시 주의하세요" 참조>

1.3. 장례 후 절차

1.3.1.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의무자

▪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

▪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2항).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기간

▪ 사망신고는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 사망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사망신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고,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6).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 ※ 사망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17조제1항).

위반 시 제재

▪ 사망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장소

▪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본문).

▪ 다만,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한 경우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단서).

> ※ 사망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가족관계 등록』 <사망 및 실종신고-사망신고하기-사망신고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사망신고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무연고 시신 등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해야 하며, 시신 처리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4항).

· 무연고 사망자의 개인정보 도용이나 사회복지비 부당집행과 같은 각종 범죄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망자를 처리한 시장 등이 사망 사실 확인 후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면 이를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사실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사망신고의 경우와는 달리 사망자의 성명·성별·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가 적힌 통보서 외에 추가로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2303-1호>

2. 장사(葬事)

2.1. 화장(火葬)하기

2.1.1. 화장 절차 및 방법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

"화장"이란?

▪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화장의 시기

▪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하지 못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본문).

※ 이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화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호).

▪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단서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으로 사망한 시신(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 뇌사 판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을 받은 후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신

화장을 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화장신고

▪ 화장을 하려는 사람은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 다만,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장을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

화장신고 시 제출 서류

▪ 화장을 하려는 사람은 화장신고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제4항).

▹ 시신·유골 화장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죽은 태아의 경우 죽은 태아 화장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 제외)

화장시설에서만 화장을 해야 합니다.

화장의 장소

▪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단서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조제1호).

▹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으로 사망한 시신을 화장하는 경우(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 이를 위반하여 화장장 외의 시설·장소에서 화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호).

※ 전국 화장시설의 위치 및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ehaneu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을 하려면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정해진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화장의 방법

▪ 화장을 하려는 사람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음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호).

▹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않은 유골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완전히 태워야 합니다.

▹ 화장할 때 관 속에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유리·탄소제품 포함)을 넣으면 안 됩니다.

※ 화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화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호).

Q. 묘지에 매장했던 시신을 화장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 이미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개장”이라고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개장을 하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개장의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매장한 시신을 화장하려는 경우에는 시신의 현존지(現存地)와 개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예를 들어, 현재 매장한 시신이 있는 장소가 A시이면 A시가 현존지이고, 이를 B시로 옮기고자 하는 경우 B시가 개장지입니다.

위에 따른 개장신고를 하지 않고 개장을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

※ 개장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이 콘텐츠 <장사(葬事)-매장하기-매장 절차 및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1.2. 화장시설 이용

화장시설은 시신 등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입니다.

"화장시설"이란?

▪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포함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 시신안치실 및 분향실
- 유족대기실 및 편의실
- 관리사무실
- 주차장
-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
- 장례용품 또는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시설

화장시설의 구분

구분	내용
공설화장시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화장시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사설화장시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사람이 설치·관리하는 화장시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공설화장시설의 이용

공설화장시설 이용 신고

▪ 공설화장시설에서 화장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공설화장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화장신고를 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장을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

※ 화장신고 시 제출서류는 이 콘텐츠 <장사(葬事)-화장(火葬)하기-화장 절차 및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설화장시설 사용료·관리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전단).

>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용료 또는 관리비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 **※ 공설화장시설 사용료에 대한 특례**
>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
> √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 수급자
>
>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공설화장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 이용자는 사용료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제24조제2항 및 제4항).

-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 공설화장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제24조제3항).

사설화장시설의 이용

사설화장시설 이용 신고

▪ 사설화장시설에서 화장을 하려는 사람은 사설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화장신고를 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장을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

> ※ 화장신고 시 제출서류는 이 콘텐츠 <장사(葬事)-화장(火葬)하기-화장 절차 및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설화장시설 사용료·관리비

▪ 사설화장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 이용자는 사용료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4항).

-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 사설화장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 화장장려금 지원 제도

· 사망자의 거주 지역에 화장시설이 부족하여 타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해당 지역 주민에 비해 비싼 관외 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자가 지급한 화장시설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화장장려금 지원 제도가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지자체별 화장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www.15774129.go.kr)-실속정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국 화장시설의 위치 및 가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www.15774129.go.kr)-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1.3. 봉안시설 안치

봉안시설은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입니다.

"봉안시설"이란?

▪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 제외)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봉안시설의 구분

구분	내용
공설봉안시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봉안시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사설봉안시설	개인,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또는 법인이 설치·관리하는 봉안시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제3호)

※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설봉안시설의 이용

공설봉안시설 이용 신고

▪ 공설봉안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봉안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

공설봉안시설 사용료·관리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봉안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전단).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용료 또는 관리비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 공설봉안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 이용자는 사용료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제24조제2항 및 제4항).

-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 공설봉안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제24조제3항).

사설봉안시설의 이용

※ 별도의 사설봉안시설 이용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봉안 전(前) 화장을 하므로 화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설봉안시설 사용료·관리비

▪ 사설봉안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 이용자는 사용료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4항).

-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 사설봉안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 전국 봉안시설의 위치 및 가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www.15774129.go.kr)-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1.4. 자연장지 안장

자연장지는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자연장"이란?

▪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자연장지"란?

▪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자연장지(自然葬地)"라고 하며, 자연장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수목장림"이라고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제14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대나무와 그 토지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3. 입목·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4.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5. 위 1.부터 3.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자연장지의 구분

구분	내용
공설자연장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자연장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유지에 조성·관리하는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사설자연장지	개인,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또는 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및 별표 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장의 방법

골분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 자연장을 하는 사람은 화장한 유골을 묻거나 뿌리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골분을 묻거나 뿌릴 때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8조제1항).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는 경우

√ 지면으로부터 30㎝ 이상의 깊이에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합니다.

√ 골분, 흙, 용기만을 묻을 수 있고, 그 밖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 됩니다.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경우

√ 골분을 해양에 뿌리는 경우에는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5㎞ 이상 떨어진 곳에서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 뿌려야 하고, 다른 선박의 항행·어업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골분, 생화(生花)만을 뿌릴 수 있고, 그 밖의 용기·유품 등을 해양으로 배출해서는 안 됩니다.

√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에 골분을 뿌리는 경우에는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장소에 뿌리는 경우에는 골분을 뿌린 후 잔디를 덮거나, 골분을 깨끗한 흙과 함께 섞어 뿌린 후 지면에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뿌려야 합니다.

골분을 담는 용기의 기준

▪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재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 생분해성수지제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 자연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자연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호).

공설자연장지의 이용

공설자연장지 이용 신고

▪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

공설자연장지 사용료·관리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전단).

>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용료 또는 관리비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 이용자는 사용료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제24조제2항 및 제4항).

-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제24조제3항).

> ※ 국유 수목장림의 사용료·관리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설자연장지의 이용

※ 별도의 사설자연장지 이용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자연장 전(前) 화장을 하므로 화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설자연장지 사용료·관리비

▪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 이용자는 사용료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4항).

-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 전국 자연장지의 위치 및 가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www.15774129.go.kr)-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 매장하기

2.2.1. 매장 절차 및 방법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매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매장"이란?

▪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매장의 시기

▪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을 하지 못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본문).

※ 이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매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호).

▪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매장을 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단서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으로 사망한 시신(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 뇌사 판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을 받은 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신

지정된 묘지에만 매장을 해야 합니다.

매장의 장소

▪ 누구든지 공설묘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사설묘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구분	내용
공설묘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묘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사설묘지	개인,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또는 법인이 설치·관리하는 묘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호).

Q. 국립묘지에는 누가 안장되나요?

A. 국립묘지에는 대통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현역군인 등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등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안장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습니다.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면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며,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국립묘지의 위치 및 안장 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스템(www.ncm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장을 하려면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정해진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매장의 방법

▪ 매장을 하려는 사람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음의 방법 및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호).

-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않은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매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매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호).

시신 약품 처리 방법

▪ 매장을 하려는 사람이 시신에 대해 약품처리를 하려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 시신 약품처리는 시신약품처리실과 약품보관실을 갖춘 장례식장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 시신약품처리실은 실내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환기시설, 소독시설, 상하수도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갖춰야 하고, 약품보관실은 환기가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약품처리로 인해 시신을 손상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 시신 약품처리를 하는 경우 「약사법」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약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시신 약품처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 시신 약품처리 중에 배출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에 준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시신 약품처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탁물의 처리방법에 관해서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을 따릅니다.

※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 기준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호).

매장을 했다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매장신고

▪ 매장을 한 사람은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다만, 공설묘지에 매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묘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매장을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

매장신고 시 제출 서류

▪ 매장을 하려는 사람은 매장신고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4항).

- 시신·유골 매장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죽은 태아의 경우 죽은 태아 매장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개장**
>
>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개장을 하려면 토지 소유자, 분묘 설치자 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가 다음의 절차에 따라 개장 및 개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다음에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改葬地)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개장지

2.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방법과 기준을 따르되, 종전의 분묘는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호).

※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개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호).

2.2.2. 공설묘지 이용

공설묘지의 사전 매매 및 양도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공설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는 공설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 이를 위반하여 공설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이라도 공설묘지의 매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단서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70세 이상인 사람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뇌사자(「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사람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
- 합장(合葬)을 하기 위한 경우(매장된 사람의 배우자에 한정)
-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설묘지의 분묘 설치기간은 30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이고,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7호).

공설묘지 분묘 설치기간

▪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설치기간을 계산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공설묘지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묘지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 공설묘지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은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호).

- 연장신청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공설묘지의 분묘 설치기간이 끝나면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6호).

▪ 연고자가 철거 및 화장·봉안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공설묘지의 설치자가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공설묘지 이용자는 사용료·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설묘지 사용료·관리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전단).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용료 또는 관리비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 공설묘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 이용자는 사용료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제24조제2항 및 제4항).

-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 공설묘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제24조제3항).

※ 전국 공설묘지의 위치 및 가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www.15774129.go.kr)-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3. 사설묘지 이용

사설묘지의 종류

사설묘지의 종류

▪ 사설묘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구분	내용
개인묘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사람과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가족묘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사람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종중·문중묘지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법인묘지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이고,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7호).

사설묘지의 사전 매매 및 양도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사설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는 사설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 이를 위반하여 사설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이라도 사설묘지의 매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단서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70세 이상인 사람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뇌사자(「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사람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
- 합장(合葬)을 하기 위한 경우(매장된 사람의 배우자에 한정)

사설묘지의 분묘 설치기간은 30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설묘지 분묘 설치기간

▪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설치기간을 계산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사설묘지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묘지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 사설묘지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은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

- 연장신청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법인묘지의 경우 해당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에게 연장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3호).

사설묘지의 분묘 설치기간이 끝나면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6호).

▪ 연고자가 철거 및 화장·봉안을 하지 않은 때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법인묘지 이용자는 사용료·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묘지 사용료·관리비

▪ 법인묘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 이용자는 사용료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4항).

-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 법인묘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 전국 사설묘지의 위치 및 가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www.15774129.go.kr)-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사설묘지의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